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내 긴급조치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 근거 마련 등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56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긴급조치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 근거 마련	3
2. 교육부장관·교육감·경찰청장 협력 의무 신설	8
3. 개정안 부칙	10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승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24.

3. 회부연월일 : 2025.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긴급조치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 및 교직원에 대한 분리 등 긴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u>경찰관</u> 을 둘 수 있다. <u><신 설></u>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 ----- ----- -- <u>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u> -----. ② <u>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교직원에 대한 분리 등 긴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0조의6¹⁾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²⁾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발 요건, 업무 및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 간의 상호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었고, 학교전담경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6은 2017년 11월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바 있음.
- 이후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2023년 12월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³⁾) 역할 강화 방안⁴⁾」 마련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⁵⁾ 참석 및 자문 등 조사관 지원과 학교폭력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3) SPO(School Police Officer)

4)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교육부 보도자료, 2023.12.6.자) 참고

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의무화⁶⁾ 등으로 업무를 확대하였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은 2023년도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하여 2024년도부터 1,127명(정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1,133명(현원)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약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음.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⁷⁾으로 인해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하여 교내에서의 위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분리하는 등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를 하는 등 긴급조치와 후속조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⁸⁾」(백승아의원

5) 학교폭력 사례회의 운영(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p. 54)

- 참석 대상: 학교폭력 제로센터장, 장학사, 주무관, 해당 사안 전담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SPO), 외부 전문가 등
※ 교육(지원)청 내부 구성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성폭력, 언론보도사안 등 중대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전담 경찰관이나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음
• 운영 방법: 수시, 정례화,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등의 방법으로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33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의2.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

7) 2025년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임.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조의11 신설

제30조의11(교직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후속조치)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057호)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 및 교직원에 대한 분리 등 긴급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교육감·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하려는 내용의 동 개정안이 함께 발의되었음.

□ 개정안과 같이 학교 내 긴급조치 필요 상황에서 학교의 장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내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학교전담경찰관은 특정 학교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평균 10.7개교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학교의 장의 협조 요청에 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설령 학교전담경찰관이 특정 사건이 벌어진 시점에 그 학교

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분리하는 등 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긴급조치를 한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 등 후속조치(이하 “후속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긴급조치 및 후속조치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전담경찰관은 상담 및 예방에 보다 특화되어 있는 상담형 경찰에 가까우므로, 물리적인 폭력에 직접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⁹⁾.

□ 교육부는 위험 발생 방지, 범죄 진압, 구호대상자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112신고 후 출동한 현장 경찰관이 더 적합해 보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특정 학교에 상시 배치되어 근무하는 인력이 아니므로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긴급조치를 위한 학교의 장의 지시와 경찰청장 간의 지휘·감독권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9) 일반적으로 폭력 대응에는 적어도 2인 이상의 경찰 협업이 필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우 청소년상담사·학교폭력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상담형 경찰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부장관·교육감·경찰청장 협력 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교육감·경찰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u>경찰관</u> 을 둘 수 있다.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 ----- ----- -- <u>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u> -----.
<신 설>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은 <u>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협력하여야 한다는 개정규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선도를 위하여 주요 관련 기관의 장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학교전담경찰관의 주무 부서인 행정안전부장관을 개정안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며,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의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교육부장관 등과 협의하도록 하는 개정규정은 권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
일만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나. 검토의견

- 개정안에는 부칙에 시행일만 규정되어 있고, 어떠한 경우부터 개정
안을 적용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적용례를 마련하여 이 법 시
행 이후에 학교의 장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부
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검 토 의 건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협조 요청에 관 한 적용례) 제20조의6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 의 장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 조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187

【참고자료 1】 소년업무규칙

소년업무규칙[시행 2021. 1. 1.] [경찰청예규 제57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3절 학교전담경찰관

제12조(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제13조(학교전담경찰관 선발)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상담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및 소년업무 경력자 등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으로 선발한다.

제14조(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 활동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3. 학교 내 일진 등 폭력씨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해체·선도·관리
4. 학교폭력 피해사례 접수 및 가·피해학생 상담을 통한 지원 및 선도
5. 학교와 경찰서간 연락체계 구축
6.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아동안전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과의 협력·연계를 통한 학교 내외에서의 학생 보호 활동
7. 학교 밖 청소년 탐색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등 지원
8. 아동학대·소년범죄 등 정보수집 및 가·피해 청소년 선도·지원

제15조(학교와의 협력) 학교전담경찰관은 담당 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참고자료 2】 시·도 경찰청별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및 현원 현황

(‘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	정원	1,130	135	65	49	54	33	32	24	7	166	63	58	43	66	69	73	87	88	18
	현원	1,040	145	61	41	49	30	31	22	7	146	57	58	40	55	67	72	73	74	12
'21	정원	1,122	135	65	49	54	29	32	24	7	165	63	58	42	66	67	73	87	88	18
	현원	1,030	142	63	43	50	25	29	22	6	154	52	55	40	54	66	72	75	70	12
'22	정원	1,023	133	62	44	48	26	29	22	4	151	55	55	37	58	62	69	78	75	15
	현원	970	133	63	42	42	25	25	20	7	146	48	53	35	50	60	68	69	71	13
'23	정원	1,022	133	62	44	48	26	29	21	4	151	55	55	37	58	62	69	78	75	15
	현원	976	134	61	42	43	26	29	21	7	145	51	55	36	47	59	65	68	72	15
'24	정원	1,127	149	66	51	55	29	31	23	9	175	64	57	42	63	63	72	78	83	17
	현원	1,133	150	68	47	56	29	32	23	9	185	64	58	42	58	63	71	78	83	17

주: (SPO 1인당 담당 학교수, 현원 기준) '20년도 11.3개교, '21년 11.4개교, '22년 12.7개교,
'23년도 12.7개교, '24년도 10.7개교

자료: 교육부